

##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의안  
번호

496

제출연월일 : 2002년 3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21C문화·관광시대에 대비한 비즈니스 및 국제교류 공간인 「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」의 변경과 2004년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개최에 따른 「다목적체육관 건립」 및 종자생산시험장 시험포가 공공용지(도로)로 편입되어 그 면적에 상용하는 「시험포 취득」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#### □ 재산의 취득

##### <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 >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0-11번지의외 243필지
- 규 모 : 579,056㎡ (244필지)
- 사업기간 : 2000~2010
- 사업비 : 1,378억원(보상비 497, 용역비 21, 공사비 860)
  - ※ 도비 : 518억원, 민자·외자 등 860억원
- 사업변경내역
  - 규 모 : (당초) 403,306㎡ (변경) 312,599㎡
  - 사업비(도비) : (당초) 160억원 (변경) 497억원
  - ※ 당초예산 160억원은 '99년 (50억원), 2002년 (110억원) 확보

**< 다목적 체육관 건립 >**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-6번지 3,688㎡
- 규 모 : 연건평 2,800평정도(지하 2층, 지상 5층)
- 사업기간 : 2002~2004. 5
- 총사업비 : 103억원(도비 63억, 교부세 10억, 국비 30억)

**※ 부지매입비 제외**

- 건립부지는 청주시 소유로 체육관건립후 무상양여(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)조건으로 청주시와 토지사용협의(지방재정법시행령제89조)를 거쳐 건축

**< 종자생산시험장 대체농지 취득 >**

- 위 치 :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일원
- 규 모 : 17,000㎡
- 사업기간 : 2002. 3~2002. 12
- 총사업비 : 340,000천원(도비)

**3. 예산상황**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재산취득	재산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	비 고
계	60,340,000 (도비:56,340,000)				
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	49,700,000 (도비:49,700,000)				
다목적체육관 건립	10,300,000 (도비:6,300,000)				
종자생산시험장 농지취득	340,000 (도비:340,000)				



#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

## 200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【회계명 : 일반회계,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】

(단위 : 천원)

구	분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	계	토지			2	329,599㎡	50,040,000	2	329,599㎡	50,040,000
		건물			1	2,800평	6,300,000	1	2,800평	6,300,000
		기타								
	매입	토지			2	329,599㎡	50,040,000	2	329,599㎡	50,040,000
		건물			1	2,800평	6,300,000	1	2,800평	6,300,000
		기타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기타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처	계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매각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기타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
\* 금액은 총사업비에 대한 도비 예산임

##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1-2)표준중 (198)회-1차부목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재산취득 소 유 자 주소,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0-11번지외	329,599㎡	50,040,000 (16,000,000)				
	건물	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-6번지	2,800평	6,300,000				
	기타							
1	토지	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0-11 번지외	312,599㎡	49,700,000 (16,000,000)	2000 ~2010	말레니엄 타운 조성	김정열외	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
		진천군 진천읍 성석리	17,000㎡	340,000	2002. 3 ~2002.12	종자생산 시험장대체 농지취득		일반회계
	건물	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-6번지	2,800평	6,300,000	2002. 3 ~2004. 5	다목적체육관 건립 (산책)		일반회계
	기타							

\* ( )는 예산 확보금액

# 관 계 법 령 발 취

## 【지방제정법 및 동법시행령】

지 방 제 정 법	지 방 제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①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</p> <p>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.</li> <li>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</li> </ol>

## 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</li> <li>2 ~ 5호 생략</li> </ol>